

광양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
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	1190
번 호	-1

발의년월일 : 2005. 12.

발 의 자 : 김재운 의원 외 3 명

1. 수 정 이 유

- 특별회계 설치 인용조문을 현행 법체계에 맞도록 하며, 도비 보조금을 국비 보조금과 함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상보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일부자구를 삭제하여 간단명료한 조문정리를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.

2. 주 요 내 용

- 특별회계 설치 인용 조문을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로 규정 (안 제2조제1항)
- 국·도비 보조금 및 응자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3조제4호)

광양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광양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1항중 “제115조”를 “제117조”로 한다.

안 제3조제1호중 “도시계획관련” 동조제2호중 “결산결과”를 각각 삭제하며,
동조제3호중 “정부의”를 “국·도비”로 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광양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조례안	수정안
<p>제2조(설치 및 관리) 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(이하 "대지보상특별회계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</p> <p>②(생략)</p> <p>제3조(재원)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.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% 이내 해당액 3. 성부의 보조금 및 읍자금 4. ~ 5. (생략) 	<p>제2조(설치 및 관리) ①..... 제117조</p> <p>.....</p> <p>②(조례안과 같음)</p> <p>제3조(재원)</p> <p>.....</p> <p>1. <삭제></p> <p>2. <삭제></p> <p>.....</p> <p>3. 국·도비.....</p> <p>4. ~ 5. (조례안과 같음)</p>

광양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

의안 번호	117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10. 11

제출자 : 광양시장

1. 제안이유

-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시설부지의 토지 중 지목이 "대"인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인정
[「도시계획법」 제6조 위헌소원 : 1999. 10. 21. 97헌바 26전원 재판부]
- 2002. 1. 1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0. 1. 28 「도시계획법」 전문개정 시 도입 2002. 2. 4 제정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포함
- 2004. 2. 9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편입된 "대" 2필지 매수결정하고 2005년도에 첫 매수개시하게 되므로써 본격적인 매수청구 예측되므로 독립계리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코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매수보상 결정 대지의 보상비 지급 등 독립계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·운영 - 세입재원 순세계잉여금의 20%이내 액의 의무부담, 기타일반·특별회계의 전출금, 국고지원금, 지방채 등

3. 제정 조례안 : 별첨

4. 관계 법령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7조(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)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1조(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)

5. 관련부서 의견

- 기획감사담당관-5150(2005. 9. 22) 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재원협의안 통보”
 -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%이내액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재원으로 부담

6. 예산상황 : 2004년 12월말 기준 361억원 소요

7. 사전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- 시보 및 시홈페이지 입법예고 : 2005. 10. 19 ~ 11. 8

8. 사전협의(승인)사항 : 관계부서 협의로 갈음

9. 기타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사본
- 특별회계 재정운용계획
- 2005 우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(대지) 매수계획
- 전라남도로부터 시달된 공문서 사본
 - 지역58400-2962(2002.12.16) 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 추진촉구”
 - 지역계획과-453(2005.7.21) “07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 국비예산 확보대책 통보”
-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이첩된 공문서 사본
 - 기감13310-1385(2002.11.06) 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관련 지침 이첩”
 - 기획감사담당관-5150(2005.09.22) 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지원협의안 통보”
- ‘05년도 미집행·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“대” 보상실적
- 제19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(2005. 11. 14) : 원안가결

광양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7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·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그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및 관리) 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(이하 “대지보상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②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도 시과에서 총괄·관리한다.

제3조(재원)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
2.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%이내 해당액
3. 정부의 보조금 및 용자금
4.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
5.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

제4조(용도)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.

1.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(지장물철거 보상금 포함) 및 부대경비
2.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
3.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·관리를 위한 경비

제5조(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)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.

제6조(준용)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재정법」과 동법시행령 및 「광양시 재무회계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